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제정 2018.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제적용대상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경영실적, 업무성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非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상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삭감)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을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정해진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한다.
6. “부가급여”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보수규정상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휴가수당,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등을 말한다. 다만 임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만 해당된다.
7.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연봉일액”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직원들 전체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1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2.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은 별표1과 같다.
13. “정책인상율”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제시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연봉제 임직원(이사장 제외)의 임금 인상율을 말한다.
14. “당사자”란 연봉제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연봉제적용 대상자 및 연봉계약 체결자

제4조(연봉제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공단의 임원과 팀장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 체결자) ① 이사장의 연봉계약은 시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② 상임이사과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③ 계약서 원본은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급은 매년 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기본연봉은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복직·직위해제 등 모든 신분변경 발생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성과급은 월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성과급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과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최근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용한 당해연도 중에 퇴직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감액) ① 결근일수가 당해 임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월액에서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①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은 보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개인성과급은 최저지급율을 적용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시에는 7할, 감봉시에는 4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휴직기간 중의 연봉감액) 휴직기간중의 연봉은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지급한다.

- 제13조(파견자의 연봉)** ①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원 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 제14조(기본연봉)** ① 임원(이사장 제외)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 ②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으로 구성하며,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다.

- 제15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공단의 기존 재직자가 임원이 되는 경우의 기준기본급의 책정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 보수 항목을 기준기본급으로 흡수한다.
- ② 신규 임용자는 보수규정 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 제16조(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③ 정책인상율은 시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 제17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 ② 이사장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및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성과연봉은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되며 익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18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9조(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공단의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 기준기본급의 책정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 보수항목을 기준기본급으로 흡수한다.

② 신규 임용자는 보수규정 상의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 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④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입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제21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범위내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이사장이 제1항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2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보수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 직 금

- 제24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 계속으로 보고 종래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관련규정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이 사항을 개인별 연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5조(평가자 면담 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차 평가자는 즉시 이의 제기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7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원의 경우에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팀장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제28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로부터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위원회의 재심결과를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 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

(제3조제12호 관련)

직 급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임 원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팀 장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연차휴가수당
직 원	기본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 일·숙직수당, 특정업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 봉 계 약 서

I.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직 위	이 사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기간 : 20 ~ 20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12월에 지급함	

가.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경영성과를 토대로 연말에 결정하여 12월에 지급한다. 다만, 경영평가 등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성과급의 “마”급인 0% 지급한다.

나.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라.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으로 한다.

마.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사.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I.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연봉제적용대상자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연봉계약체결자 : 사천시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 봉 계 약 서

I.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계약기간 : 20 ~ 20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연 봉	부 가 급 여
원(월 원)	12월에 지급함	

가.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2월에 지급하며 기준 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나. 기본연봉은 연봉제규정상의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의 기관 및 개인평가를 토대로 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결정하며,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라.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으로 한다.

마.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II.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그 밖에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연봉제적용대상자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인)

연봉계약체결자 :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